

## 일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정보신청기관 : 대한적십자사

### I. 서론 : 기부금에 관한 제세의 개요(국세)<sup>1)</sup>

기부금의 구분은 아래 4 가지가 있다.

#### 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예) 공립고교, 공립도서관 등

#### ② 지정기부금 :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고 긴급을 필요로 한 특정한 사업에 충당되는 것

(예) 국보의 수복, 올림픽의 개최, '빨간 날개' 모금(중앙공동모금회), 사립학교의 교육·연

구 등, 국립대학법인의 교육·연구 등

#### ③ 특정공익증진법인<sup>2)</sup>에 대한 기부금 : 독립행정법인, 일정한 지방독립행정법인, 일본적십자 등, 공익사단·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갱생보호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법인의 주된 목적인 업무에 관련된 것

#### ④ 인정NPO법인<sup>3)</sup>에 대한 기부금 : 특정비영리활동을 실시하는 법인(NPO)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국세청 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에 관련된 것



1) 기부세제의 개요(국세)에 관하여는 다음 웹사이트(財務省(재무성))를 참조.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217.htm](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217.htm)

2) 특정공익증진법인이라 함은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법인'이라는 뜻이며,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 중에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7조, 법인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된 기부행위에 관한 제도.

3) 인정NPO법인은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11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가리키며, 2011년 6월 16일 시점에 유효기간 내에 있는 법인(218개)은 다음 웹사이트(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ta.go.jp/tetsuzuki/denshi-sonota/np/meibo/01.htm>

## II. 본론

1) 소득세에 관한 앞의 4가지의 모든 구분에 대하여

(기부금(※) - 2,000엔)을 소득에서 공제

(※)총소득의 40% 상당액을 한도로 함.

2) 법인세에 관하여는

① 및 ②에 대하여 전액손금산입(全額損金算入)이 적용되고,

③ 및 ④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0.25% + 소득금액의 5%) × 1/2를 상한으로 손금에 산입(참고 1)

3) 상속세에 관하여는 중앙정부, 공익사단·재단법인, 인정NPO법인 등에 기부한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참고 2)

[참고 1] 법인이 지출하는 위 기부금 중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은 부분은 상기 외의 기부금과 합쳐서 {(자본금 등의 0.25% + 소득금액의 2.5%) × 1/2}을 상한으로 손금에 산입.

[참고 2]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공익사단·

재단법인, NPO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1. 개인에 의한 기부와 소득세 공제<sup>4)</sup>

개인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소득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 공제’ 제도가 있다.

이 ‘기부금 공제’는 2007년도의 세제 개정에서 개인에 의한 고액의 기부를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의 30%로 되던 공제액의 상한이 소득의 40%로 인상되었다. 또한 2010년도 세제 개정으로 적용 하한이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되었다. 이로써 기부금의 금액이 연도마다 2,000엔을 넘으면 감세의 대상이 되며, 소액의 기부가 크게 촉진되었다.

#### 1) 제도의 개요

개인이 인정NPO법인,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특정기부금), 다음과 같은 세제상 우대조치의 대상이 된다.<sup>5)</sup>



4) 기부에 의한 소득세 공제에 관하여는 주로 국제청 웹사이트(다음 URL)를 참조.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150.htm>, 또 참조 조문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 217조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 18, 제41조의 18의 3, 제41조의 19,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의 28, 제26조의 28의 3,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10의 2, 제19조의 11,平成(平成) 20년 개정 소득세 시행령 부칙 13,平成 20년 개정 소득세법 부칙 55,平成 22년 개정 소득세법 부칙 1, 2.

5) 개인에 의한 기부와 감세의 대략은 다음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mext.go.jp/a\\_menu/kai-kei/zeisei/06051001.htm](http://www.mext.go.jp/a_menu/kai-kei/zeisei/06051001.htm)

## 2) 특정기부금의 범위

특정기부금이라 함은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교의 입학에 관하여 하는 것, 기부를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익이 되는 것 및 정치자금규제법에 위반되는 것 등은 제외한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2)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재무대신(財務大臣)이 지정한 것

가. 널리 일반에 모집되는 것

나.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한 것에 할당될 것이 확실한 것

(3) 소득세법 별표 제1에 제시한 법인, 기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당해 법인의 주된 목적인 사업에 관련된 기부금((1) 및 (2)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가. 독립행정법인

나. 지방독립행정법인 중 일정한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다.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일본사법지원센터,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및 일본적십자

라.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마.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일정한 것 및 과학기술 연구를 행하는 특정법인

바.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으로 학교의 설치 내지 학교 및 전수학교 내지 각종 학교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 또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수학교 내지 각종 학교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

사. 사회복지법인

아. 갱생보호법인

(4) 특정공익신탁 중 그 목적이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일정한 것의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

(5)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 중 일정한 것

(6) 인정특정비영리법인(이른바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일정한 것

(7) 특정신규중소기업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신규주식을 납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특정신규주식의 취득에 필요했던 금액 중 일정한 금액(한도액 1천만 엔)

(8)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일정한 것(2013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하는 것에 한함)

### 3) 기부금공제금액의 계산방법

기부금공제에 관한 공제금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의 금액 중 낮은 금액) - 2,000엔 = 공제금액  
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특정기부금의 합계액  
나. 당해 연도의 총소득금액 등<sup>6)</sup>의 40% 상당액

### 4)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기부금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확정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정신고서 제출 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 (1) 기부한 단체 등에서 교부받은 영수증 등
- (2) (1)의 영수증 등 외에 아래에 포함되는 서류  
가. 위 2) (3) 나.에 대하여는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설립단체의 그 뜻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서 교부 받은 것  
나. 위 2) (3) 마. 및 바.에 대하여는 특정공익증진법인임의 증명서의 사본  
다. 위 2) (4)에 대하여는 특정공익신탁임의 증명서의 사본  
라. 위 2) (5)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확인 도장이 있는 “기부금(세액) 공제를 위한 서류”

※ 확정신고서 제출시까지 “기부금(세액) 공제를 위한 서류”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영수증(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하고 나중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위한 서류”가 송부된 후에 되도록 일찍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마. 위 2) (7)에 대하여는 (1)의 영수증 등에 더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특정신규중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필요했던 금액의 기부금공제액의 명세서
- (나) 특정(신규)중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필요했던 금액의 공제명세서
- (다) 경제산업대신(經濟産業大臣)이 발행한 특정신규중소회사에 해당하는 것 등 일정한 사실의 확인서
- (라) 특정신규중소회사가 발행한, 개인투자자가 일정한 동족주주(同族株主) 등에 해당하지 않는 뜻의 확인서
- (마) 특정신규중소회사에서 교부 받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 (바) 투자계약서의 사본



6) 총소득금액 등(總所得金額等)이라 함은 대강 순손실(純損失), 잡손실(雜損失), 기타 각종 손실의 이월공제 후의 총소득금액, 특별공제 전의 분리과세의 장·단기양도소득의 금액,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등의 금액, 상장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의 금액, 선물거래에 관한 잡소득 등의 금액, 산림소득금액 및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총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nta.go.jp/tetsuzuki/shinkoku/shotoku/tebiki2010/b/03/order/3/yogo/3-3\\_y01.htm](http://www.nta.go.jp/tetsuzuki/shinkoku/shotoku/tebiki2010/b/03/order/3/yogo/3-3_y01.htm)

바. 위 2) (8)에 대하여는

(가) 기부금을 수령한 법인이 특정지역 고용 등 촉진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기부를 한 자가 기부를 한 날에 인 정지역재생계획에 정해진 구역 내 에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 소)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민표의 사본 또는 근무처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사업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신 술서(事業申述書)

#### 5) 정당 등 기부금특별공제제도<sup>7)</sup>

개인이 1995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 까지 사이에 지출한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으로 일정한 것(※) (이하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지출한 연도의 소득공제로서의 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받거나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당해 연도의 소득세액의 25% 상당 액을 상한으로 함)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거나 어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일정한 것'이라 함은 정치자금규제법<sup>8)</sup>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 및 정치

자금규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 하는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정치활동에 관 한 기부(동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 및 그 기부를 한 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정치자금규제 법 제12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 고서에 기초하여 보고된 것을 말한다.

<특별공제금액의 계산>

[당해 연도에 지출한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합 계액(☆) - 2,000엔(★)]×30% = 정당등기부 금특별공제액(100엔 미만은 절사)

(☆) '당해 연도에 지출한 정당에 대한 기부금 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소 득금액 등의 40%(2005년도 및 2006년도 는 30%, 2004년도는 25%) 상당액이 상한 이 된다. 다만 기부금공제의 적용을 받는 특정기부금이 경우로 정당 등에 대한 기 부금의 합계액에 그 특정기부금의 합계 액을 가산한 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소득 등의 40% 상당액을 넘을 때에는 그 40% 상당액에서 그 특정기부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 '2,000엔'에 대하여는 기부금공제의 적 용을 받을 특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2,000엔에서 그 특별기부금의 합계액을



7) 다음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260.htm>, 이번에는 생략했지만 개인에 의한 정치자금과 기부에 대하여는 다음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154.htm>

8) 법령명의 원문은 정치자금규정법(政治資金規正法)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05년도는 '10,000엔', 2006년도에서 2009년도는 '5,000엔'으로 계산한다.

6) 정당 등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확정신고서에 공제를 받을 금액에 대하여 그 공제에 관한 기재가 있고 '정당 등 기부금공제 특별공제액의 계산 명세서'<sup>9)</sup> 및 총무대신(總務大臣)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県)<sup>10)</sup>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확인 도장이 찍힌 '기부금(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주) 확정신고서 제출 시까지 위 '기부금(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부금의 영수증(사본)'만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나중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받고 신속히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2. 기부에 의한 법인세 감액

법인에 의한 기부금 중에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손금산입(損金算入)할 수 있고, 학교법인이나 독립행정법인,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별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대하여는 2008년도 세제 개정에서 소득기준이 소득금액의 2.5%에서 5%까지 인상되었다. 그 결과 종전에는 실질적으로 일반 기부금의 2배였던 손금산입한도액이 약 2.7배로 확대되었다.<sup>11)</sup>

### 1)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sup>12)</sup>

특정공익증진법인이라 함은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을 제외) 기타 특별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



9) 이 명세서의 서식 등은 다음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http://www.nta.go.jp/tetsuzuki/shinsei/annai/shinkoku/annai/1557\\_2.htm](http://www.nta.go.jp/tetsuzuki/shinsei/annai/shinkoku/annai/1557_2.htm)

10) 일본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都(도), 道(도), 府(부), 県(현)의 총칭. 2011년 현재 都(도)가 한 곳(도쿄도), 道(도)가 한 곳(북해도(北海道)), 府(부)가 두 곳(오사카후(大阪府), 교토후(京都府)), 県(현)이 나머지 43곳임.

11) 법인에 의한 기부와 감세의 대략은 다음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mext.go.jp/a\\_menu/kaikei/zeisei/06051001.htm](http://www.mext.go.jp/a_menu/kaikei/zeisei/06051001.htm)

12)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관하여는 다음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nta.go.jp/taxanswer/hojin/5283.htm>.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참조조문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7조. 평성 20년 개정 법인세법 부칙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7조, 제77조의2.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평성20년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1,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제23조의 2, 제23조의 3, 제24조.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평성 20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5.



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 대한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아래와 같은 법인을 말한다.

- (1)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 (2)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 중 일정한 것
- (3)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일본적십자사 등
- (4) 민법 제34조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 중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재단법인 무역연수센터 등(◆)
- (5) 민법 제34조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위(4)의 법인을 제외) 중 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 등으로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소관 대신의 인정을 받은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
- (6)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 (7)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으로 일정한 것
- (8) 사회복지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 (9)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갱생보호법인
- (◆) 민법 제34조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은 2008년 12월 1일 이후 특례민법법인에 이행되었으나 같은 날부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

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동법 제121조 제1항에서 바뀌 읽을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이행의 등기를 하는 날의 전일까지(즉, 특례민법법인인 동안에는) 종전대로 특정공익법인으로서 취급된다.

##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아래에 든 법인이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하여 그 특정공익증진법인의 주된 목적인 업무에 관련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아래의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의 금액은 일반 기부금과 별도로 손금의 금액으로 산입된다.

- (1) 보통법인, 협동조합 등 및 비법인사단 등(아래 (2)에서 든 것을 제외)
  - 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 시의 자본금 등의 금액(0에 미달한 경우에는 0로 한다)을 12로 나누고, 이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月數)를 곱한 금액의 25/1,00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 (2) 보통법인, 협동조합 등 및 비법인사단 등 중 자본 또는 출자하지 않는 것, 일반재단법인 및 일반사단법인(비영리형 법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그리고 NPO법인 등

간주공익법인<sup>13)</sup> 등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 3) 손금산입의 절차

손금산입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에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서<sup>14)</sup>’를 첨부함과 함께 그 기부금이 당해 특정공익증진법인의 주된 목적인 업무에 관련된 기부금인 것을 그 특정공익증진법인이 증명해 주는 서류 등을 보존해 둘 필요가 있다.

### 4)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sup>15)</sup>

인정NPO법인이라 함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중 그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한 것과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국세청 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말한다.<sup>16)</sup>

### 5)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인정NPO법인에 대하여 그 인정NPO법인이 행하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에 관한

손금산입한도액과 별도로 특정공익증진법인 및 특정지역고용회사(주 1)에 대한 기부금과 합쳐서 손금산입한도액(주 2)의 범위 내에서 손금의 금액에 산입된다.

다만 인정NPO법인, 특정공익증진법인 및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기부금의 합계액 중 위 손금의 금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일반 기부금에 포함된다.

(주 1)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기부금에 관하여는 2010년 3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이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기부금’을 참조

(주 2) 손금산입한도액은 앞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6) 절차 등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에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함과 함께 그 기부금이 인정NPO법인이 행하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사



13) 원문은 ‘みなし公益法人’인바, ‘みなし’는 ‘간주’라는 뜻임.

1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4(2).

15)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http://www.nta.go.jp/taxanswer/hojin/5284.htm>). 참조조문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 제37조,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11의 2,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2조의 12.

16)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인정NPO법인의 명단 열람 가능 (<http://www.nta.go.jp/tetsuzuki/denshi-sonota/np/meibo/01.htm>).



업에 관련된 기부금인 것을 그 인정NPO법인이 증명해 주는 서류를 보존해 둘 필요가 있다.

#### 7)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기부금<sup>17)</sup>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아래의 기부금을 말한다.

- (1) 지역재생법(地域再生法)에서 규정하는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당해 특정지역고용회사가 행하는 일정한 사업에 충당될 것이 확실한 기부금
- (2) 지역재생법에서 규정하는 인정지역재생계획으로 정해진 구역 내에 본점, 지점 등을 가진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으로 일정한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에 대한 그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이 행하는 일정한 사업에 관련된 기부금

#### 8)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2010년 3월 31일까지에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은 일

반 기부금에 관한 손금산입한도액과 별도로 특정공익증진법인 및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합쳐서 손금산입한도액(주)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된다.

다만 특정지역고용회사, 특정공익증진법인 및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위의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일반 기부금에 포함된다.

(주)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함은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3. 공동모금회 및 일본적십자사에 관한 조세상 우대조치<sup>18)</sup>

공동모금회와 일본적십자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세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아래서는 공동모금회 및 일본적십자사 각각에 대하여 과세 대상, 간주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 법인세율에 관한 과세에 대하여 정리한다.



17)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기부금에 관하여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http://www.nta.go.jp/taxanswer/hojin/5285.htm>). 참조조문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 제37조. (구)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12. (구)조세특별조치법 제39조의 23의 2. (구)조세특별조치법 제22의 13. 평성 20년 개정 법인세법 부칙 65. 평성 22년 개정 법인세법 부칙 1, 92. 평성 20년 개정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45. 평성 20년 개정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22.

18) ‘우대’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일반의 법인세율이 각 영업연도의 소득의 금액에 30/10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세율 30%)이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참조). 공동모금회 및 일본적십자사를 포함한 비영리법인에 관한 과세의 개요에 대하여는 재무성 웹사이트를 참조([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251.htm](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251.htm)).

## 1) 공동모금회에 관한 세제상 우대조치

공동모금회는 전국 47의 각 도도부현에 공동모금회가 있으며 그들의 연합체인 중앙공동모금회가 있으며,<sup>19)</sup> 양쪽 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이다.<sup>20)</sup>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sup>21)</sup>

### (1) 과세대상

국내 법인은 납세의무를 지나, 국내법인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공동모금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up>22)</sup>

### (2) 간주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

‘간주기부금’이라 함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에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지출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다.<sup>23)</sup>

공동모금회의 간주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2 내지 연 200만 엔 중 금액이 큰 쪽이다.<sup>24)</sup>

### (3) 법인세율

공동모금회에 대한 법인세율은 22%이다.<sup>25)</sup>

## 2) 일본적십자사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 (1) 과세대상

일본적십자사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up>26)</sup>

### (2) 간주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

일본적십자사에 관한 간주기부금손금산입한도는 소득금액의 20%이다.<sup>27)</sup>



19) 중앙공동모금회의 개요에 대하여는 웹사이트(중앙공동모금회)를 참조(<http://www.akaihane.or.jp/organization/index.html>). 각 도도부현 공동모금회에 관하여는 웹사이트(중앙공동모금회)를 참조(<http://www.akaihane.or.jp/about/prefecture/index.html>).

20) 사회복지법 제113조 제1항 및 제124조 제1항.

21) 법인세법 제2조 제6호, 별표 제2.

22) 법인세법 제7조, 별표 제2.

23) 법인세법 제37조 제4항.

24)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 ㄱ(일본 카타카나 ‘로’)를 참조.

25)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별표 제2. 다만 2009년 4월 1일~2011년 6월 30일의 기간 안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연 소득 800만 엔까지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26) 법인세법 제7조, 별표 제2.

27)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 ㄴ(일본 카타카나 ‘하’)를 참조.

### (3) 법인세율

일본적십자사에 관한 법인세율은 22%이다.<sup>28)</sup>

## 4. 일본적십자사에 대한 조세 외 지원제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적십자사가 그 업무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정비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본적십자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거나 통상적인 조건보다 일본적십자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금을 지출하고 또는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또는 대여할 수 있다.<sup>29)</sup>

일본적십자사의 2009년도 일반회계결산서<sup>30)</sup>를 봐도 본사수입과 지부수입 양쪽에 대하여 ‘보조금 및 교부금 수입’의 항목이 있고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마쓰오 가즈히코**

(해외입법조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8)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별표 제2. 다만 2009년 4월 1일~2011년 6월 30일의 기간 안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연소득 800만 엔까지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29) 일본적십자사법 제39조 제1항 본문.

30) 일본적십자사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새로 나온 것임. 다음 URL에서 열람 가능. [http://www.jrc.or.jp/vcms\\_lf/04\\_redcross\\_soumu100618ippan.pdf](http://www.jrc.or.jp/vcms_lf/04_redcross_soumu100618ippan.pdf)